

#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 - 2015. 6. 22.(월) 오픈넷 포럼 박지환 변호사

### 필터링이란?

1. 부정확하고 비밀스런 "접근통제" 수단 :  
- underblock의 가능성, DB 업데이트 문제  
- 필터링 적용의 "결과" 책임 묻기 어려움  
-> overblock 시 알 권리 침해 우려

2. 청소년 필터링 관련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  
(1) 차단대상 - DB기반, DB 업데이트 필요  
(비교 Dynamic filtering, DPI)  
(2) DB 작성(유지)의 주체 및 방식  
- 책임성(accountability)  
(3) 필터링 추진기관 및 비용부담 주체  
(4) 적법컨텐츠의 차단 문제 및 적법절차  
(5) 성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 입법적 보완

1. 헌법
2. 입법적 보완

#### 일본법과의 비교

1. 개별법적 성격 vs 전자통신사업법
2. 여러 주체와 협력(노력) 의무 vs 통신사업자의 의무
3. 안전차질(수거)과 과실과제 vs 국제연령에 호기
4. 필터링 국제 명시 vs 필터링 구분 미흡
5. 필터링 거부도(라인) 문제 vs 서면적의 입장에 불만

#### 필터링의 작용

#### 헌법적 검토 1

1. 동 제정법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호(이하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필터링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동 제정법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호(이하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필터링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적 검토 2

1. 제1호는 기본권
2. 과잉위헌 여부

#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 - 2015. 6. 22.(월) 오픈넷 포럼 박지환 변호사

### 필터링이란?

1. 부정확하고 비밀스런 "접근통제" 수단 :  
- underblock의 가능성, DB 업데이트 문제  
- 필터링 적용의 "결과" 책임 묻기 어려움  
-> overblock 시 알 권리 침해 우려

2. 청소년 필터링 관련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  
(1) 차단대상 - DB기반, DB 업데이트 필요  
(비교 Dynamic filtering, DPI)  
(2) DB 작성(유지)의 주체 및 방식  
- 책임성(accountability)  
(3) 필터링 추진기관 및 비용부담 주체  
(4) 적법컨텐츠의 차단 문제 및 적법절차  
(5) 성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 입법적 보완

1. 헌법
2. 입법적 보완

#### 일본법과의 비교

1. 개별법적 성격 vs 전자통신사업법
2. 여러 주체와 협력(노력) 의무 vs 통신사업자의 의무
3. 안전차질(수동적) 과실책분 vs 국제연령에 따라
4. 필터링 국제 명시 vs 필터링 구분 없음
5. 필터링 거부도(라인) 문제 vs 서면적의 입장에 제한

#### 필터링의 작용

#### 헌법적 검토 1

1. 동 제정법령 제13조, 부속법령(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 검토 필요
  - 위헌성 여부 검토 필요
  - 위헌성 여부 검토 필요
  - 위헌성 여부 검토 필요
2. 위헌성 여부 검토 필요

#### 헌법적 검토 2

1. 위헌성은 기본권  
규범적, 규범적 내용, 알 권리, 입법적 합당성유권, 평  
등권, 자기정보자기결정권
2. 과잉위헌 여부 여부
  - (1) 과잉위헌 여부 여부 (연대문제와 비교)
  - (2) 과잉위헌 여부 여부 (연대문제와 비교)
  - (3) 위헌 여부 - overlocking 문제 (과잉위헌 문제)
  - (4) 위헌 여부 - 위헌 여부 (연대문제와 비교)
  - (5) 위헌 여부 - 위헌 여부 (연대문제와 비교)

# 필터링이란?

1. 부정확하고 비밀스런 "접근통제" 수단 :
  - underblock의 가능성, DB 업데이트 문제
  - 필터링 적용의 "결과" 책임 묻기 어려움
  - > overblock 시 알권리 침해 우려
2. 청소년 필터링 관련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
  - (1) 차단대상 - DB기반, DB 업데이트 필요  
(비교 Dynamic filtering, DPI)
  - (2) DB 작성(유지)의 주체 및 방식
    - 책임성(accountability)
  - (3) 필터링 추진기관 및 비용부담 주체
  - (4) 적법콘텐츠의 차단 문제 및 적법절차
  - (5) 성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 필터링의 작용

사업자 (차단 유인)	필터링 대상	차단여부	성인 이용자 (알 권리)
음란물 아닐때 면책 여부	음란물 (판단?)	차단	알권리 침해 가능성
음란물일 때 면책 여부 / 차단유인 (overblock)		차단 x	-
음란물 아닐때 면책 여부	중간영역 (판단?)	차단	알 권리 침해 (overblock)
청소년 특정 문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x (본인확인)	(알 권리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적법컨텐츠	차단 x	-

필터링 대상	차단여부	청소년 이용자 (알 권리)
음란물 (판단?)	차단 (기술적 불완전)	-
중간영역 (판단?)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유물 지정의 적법성에 따라 알권리 침해 가능
적법컨텐츠	차단	알권리 침해 (overblock)
	차단 x	-

사업자 (차단 유인)	필터링 대상	차단여부	성인 이용자 (알 권리)
음란물 아닐때 면책 여부	음란물 (판단?)	차단	알권리 침해 가능성
음란물일 때 면책 여부 / 차단유인 (overblock)		차단 x	-
음란물 아닐때 면책 여부	중간영역 (판단?)	차단	알 권리 침해 (overblock)
청소년 특정 문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x (본인확인)	(알 권리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적법컨텐츠	차단 x	-

필터링 대상	차단여부	청소년 이용자 (알 권리)
음란물 (판단?)	차단 (기술적 불완전)	-
중간영역 (판단?)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유물 지정의 적법성에 따라 알권리 침해 가능
적법컨텐츠	차단	알권리 침해 (overblock)
	차단 x	-

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헌법 제1조 제1항 제2호는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호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지, 국호의 사용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호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헌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헌법적 검토 1

1. 법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1) 차단수단 및 차단대상 정의 미흡
    - 필터링 외 모니터링, 앱 사용 통제 기능도 포함됨,
    - 음란물 관련 overblocking 가능성  
(음란물 판단기준의 이원화, 강화 우려)
  - (2) DB작성/유지 주체 및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음
  - (3) 차단수단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포괄위임
2. 시행령 (실효성 확보수단의 위임입법 한계 이탈 여부)
  - (1) 통지 의무 : 삭제 또는 15일 이상 미작동시 "통지"
  - (2) 통지 대상 : "법정대리인"
  - (3) 통지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필요



# 헌법적 검토 2

## 1. 제한되는 기본권

교육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교육권 : opt-out 조항의 부재 (셋다운제와 비교)

(2) 표현의 자유 : 음란물 판단기준 강화 / 이원화

(3) 알 권리 : overblocking 문제 (차단대상 불명확)

(4) 평등권 : 다른 사업자, 다른 인터넷 접속기기, 개정 전 청소년 가입자, 부모명의 청소년 이용자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수집, 제3자제공

# 일본법과의 비교

1. 기본법의 성격 v. 전기통신사업법
2. 여러 주체의 협력(노력)의무 v. 통신사업자의 의무
3. 민간자율(규제된 자율규제) v. 규제(운영의 묘?)
4. 필터링 주체 명시 v. 필터링 주체 모호
5. 필터링 가이드라인 존재 v. 사업자의 선의에 맡김

# 입법적 보완

## 1. 형태

- (1) 기본법 제정 (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는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원용
- (2) 전기통신사업법(모법)만 보완

## 2. 입법적 보완내용

- (1) 필터링 외 부가기능은 차단수단과 구분 / 제외
- (2) 'opt-out' 조항 또는 '동의' 조항 추가
- (3) 필터링 추진 주체 및 DB 작성/유지 주체 명시  
(웹하드용 DB와 청소년용 DB 이원화?)  
또는 "완전한 민간자율(노력의무)"로 변경
- (4) 필터링 대상 중 음란물 부분은 DB로 한정  
- 적법절차 / 책임성(public-private partnership)
- (5) 적법 콘텐츠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6) 시행령 상 모니터링/법정대리인 통지 조항 삭제

#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 - 2015. 6. 22.(월) 오픈넷 포럼 박지환 변호사

### 필터링이란?

1. 부정확하고 비밀스런 "접근통제" 수단 :  
- underblock의 가능성, DB 업데이트 문제  
- 필터링 적용의 "결과" 책임 묻기 어려움  
-> overblock 시 알 권리 침해 우려

2. 청소년 필터링 관련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  
(1) 차단대상 - DB기반, DB 업데이트 필요  
(비교 Dynamic filtering, DPI)  
(2) DB 작성(유지)의 주체 및 방식  
- 책임성(accountability)  
(3) 필터링 추진기관 및 비용부담 주체  
(4) 적법컨텐츠의 차단 문제 및 적법절차  
(5) 성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 입법적 보완

1. 헌법
2. 입법적 보완

### 일본법과의 비교

1. 개별법적 성격 vs 전자통신사업법
2. 여러 주체와 협력(노력) 의무 vs 통신사업자의 의무
3. 안전차질(수동적) 과실책분 vs 국제연령에 따라
4. 필터링 국제 명시 vs 필터링 구분 미명
5. 필터링 거부도(라인) 문제 vs 서면적외에 있어 불간

### 필터링의 작용

### 헌법적 검토 1

1. 동 제정법률 제123호, 부속법령(규칙) 제1호 제1항(이하 "법령"이라 함) 제1항 제1호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때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때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 위법성 판단을 위하여 위헌심판 청구 대상 여부
- (1) 위헌성 판단 대상 여부
- (2) 위헌성 판단 대상 여부

### 헌법적 검토 2

1. 위헌성은 기본권  
규범적, 규범적 내용, 양 권리, 입법적 합당여부, 명  
확성, 자의적보가합헌성
2. 과잉위헌 여부  
(1) 과잉성 (approach) 주체가 부채 (선다문제의 비교)  
(2) 과잉성 (approach) 주체가 부채 (선다문제의 비교)  
(3) 위헌성 (approach) 주체가 부채 (선다문제의 비교)  
(4) 위헌성 (approach) 주체가 부채 (선다문제의 비교)  
(5) 위헌성 (approach) 주체가 부채 (선다문제의 비교)